

지게차로 목재를 옮기던 중 목재 넘어짐

재해개요

2017년 10월 ○○야적장에서
피해자가 받침목을 바닥에 놓는
과정에서 동료 작업자가 운행하던
지게차가 멈춰 서자 목재가 피해자
에게 넘어지며 화물에 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원인

○ 근로자 접촉 방지조치 미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함.

○ 화물적재 시의 조치 미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아니함.

○ 작업계획서 미작성

-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운행경로에 근로자가 있을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나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함.

재해예방대책

○ 접촉의 방지조치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함(다만,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 화물의 낙하, 기계기구의 접촉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 실시

-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 투입 전 교육을 통하여 알려야 함

○ 지게차 화물 적재 시 안전조치 준수

- 컨테이너 내 화물을 하역 시 지게차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하여야 하며 시야를 가릴 경우 하역작업 후 보관 장소 이동 전 운전원의 시야확보를 위한 조치(전·후방카메라, 볼록거울 등 이용)를 한 후 이동하여야 함